

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4. 8. 8 사하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1994. 8. 10

다. 상정일자 : 제34회 사하구의회(임사회)

제1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('94. 8. 19) 상정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재무과장 주강우)

가. 제안이유

○ 공유재산 매각시 매각대금의 분납가능사항을 추가 규정하여 공유재산 매각이 용이하도록 하고 매각대금, 대부료, 사용료 등의 연체요율을 인하하여 공유재산 대부, 사용자들의 부담을 완화

○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함

나. 주요골자

○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분납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 규정함(조례 제22조)

◦ 81. 4. 30이전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

(300㎡이하 → 건물바닥 면적의 2배)

◦ 천재·지변 등 매수인에게 귀책사유 없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

◦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지역의 사유건물 점유토지를 매각하는 경우

○ 대부료, 사용료, 매각대금의 납기지연에 따른 연체요율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연체이자(연 17~19%)에서 연15%로 인하하고 변상금의 납기지연에 대한 연15% 연체요율을 추가 규정함(조례 제28조)

○ 농경지 대부료를 현행보다 1/3수준으로 인하함(조례 제22조 제2항)

◦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과세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UR대비 농촌지역 대책으로 공유농경지 대부료의 대폭적 경감, 대부료, 사용료 매각대금의 납부 지연시에 연체요율 연15%는 금융기관 일반연체 요율 연17~19%보다 낮은 것으로 사용자에게는 부담이 경감되어 주민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제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볼 때 장기체납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정확보에 약간의 차질이 예상될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(재석위원 12명중 전원찬성)